



# 스웨덴의 새로운 이주노동자 정책

손혜경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연구원)

## ■ 머리말

스웨덴에 이주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대까지이다. 유럽 본토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5월 이후 전쟁 복구 과정 중에 스웨덴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자 스웨덴의 제조업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는 노동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사업주가 우선 노동정책위원회(Arbetsmarknadsstyrelsen : AMS) 산하 국영직업알선소(Arbetsförmedlingen : Af)에 의뢰하면 국영직업알선소의 대표자가 유럽 각지를 돌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 기업체에 고용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허가를 얻어야만 일을 할 수 있었다<sup>1)</sup>.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스웨덴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핀란드-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이웃국가 출신 핀란드인들과 유고슬라비아인, 그리스인, 폴란드인 및 이탈리아인 및 기타 유럽 국가 출신들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 본토에서 산업의 생산능력이 점차 복구되면서 스웨덴 수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또한 이에 따라 스웨덴 국내 제조업계의 노동력 수요도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런 여파로 스웨덴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가 낮아지자 노동허가

1) Yalcin, Zeki(2010), Facklig gränspolitik: Landsorganisationens invandrings- och invandrarpolitik 1946-2009.

를 받아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급격이 감소하였다<sup>2)</sup>.

스웨덴 인구 중 이주 노동자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주 노동자와도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인구의 한 부류는 전쟁 난민들이다. 스웨덴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1980대에 발생한 이란-이라크 전쟁 및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리고 소말리아 등 세계 분쟁 지역에서 상당수의 전쟁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스웨덴은 특히 최근 10년 동안 몇 년을 제외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로 전체 전쟁 난민 중 약 8~12%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sup>3)</sup>.

스웨덴 내에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 노동자와 전쟁 난민들이 유입으로 2009년 현재 스웨덴의 총 인구는 약 940만 명인데 그 중 약 14%가 이주 노동자와 전쟁 난민들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내의 이러한 이주 노동자 및 난민의 역사를 배경으로 우선 스웨덴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이주 노동자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셋째, 이주 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본다. 그런 다음 스웨덴의 각 정당과 기업가연맹 및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다. 이 글은 결론에서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입안한 새로운 이주 노동자 정책은 노동시장의 세계화 추세와 스웨덴의 인구 변화 추세와 잘 조화되는 정책이며, 노동 이주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그 동안 실제적으로 닫혀 있었던 스웨덴의 노동시장의 문을 개방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 ■ 스웨덴의 노동시장 현황

스웨덴도 2008년과 2009년 2년간 세계경제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지난 수년 간 노동시장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금년 들어 스웨덴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요가 계속 증가해 실업자 중

2) Magnusson, Lars (1997), Sveriges ekonomiska historia, p.442.

3) 스웨덴의 난민 망명 허용률은 스웨덴 인구 대비 수에 대비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 예를 들어 2007년 중 유럽에서 망명을 요청한 이라크 난민 2명 중 한 명이 스웨덴에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구직에 성공하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 8월의 경우 해고 예정 인원도 지난 가을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스웨덴 전체 실업자 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국영직업알선소에 구직 등록한 인원이 총 40만 7,000명이며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8.2%에 해당한다<sup>4)</sup>.

2010년 8월의 경우 연령이 15~74세 사이의 인구 중 고용인원 수가 7만 3,000명이 증가해 스웨덴 전체의 고용인구는 461만 명을 기록하였다. 전체 고용인원 증가 수치인 7만 3,000명 중 5만 4,000명이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sup>5)</sup>.

지난 8월 동안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된 구인 수는 4만 2,000명인데, 이는 지난 해 동월과 비교할 때 약 1만 3,000명이나 많은 수치이다. 약 5만 3,000명이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약 1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sup>6)</sup>.

장기실업자들 중 노동시장상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취직한 인원은 작년에 비해 두 배만큼 증가하였는데 8월 현재 약 3,700명이 이런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청소년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고용된 인원이 지난 1년간 3배만큼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런 식으로 고용된 인원의 약 3분의 1은 이민자들이다. 실업자 중 점점 더 많은 인원이 직업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의 경우 약 1만 1,330명이 국영직업알선소 소속 직업 코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약 2만 1,451명의 실업자가 국영직업알선소가 특별히 위촉한 직업 코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직업 코치를 받은 실업자의 약 37%가 직업 코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후에 구직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sup>7)</sup>.

국영직업알선소의 노동시장 분석전문가는 노동시장이 여러 방면에서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측으로부터의 구인 수도 증가하며 구직에 성공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또한 최근 10년간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부 유럽의 소속 민족들의 주요 망명 목적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grationsverket (스웨덴이민국), 2010, Rapport 2010:2, Migration 2000-2010).

4) 스웨덴 통계청, SCB, Pressmeddelande, "Arbetskraftundersökning(AKU) augusti 2010

5) Ibid.

6) 스웨덴 노동시장위원회, 2010-09-13, Pressmeddelande

7) Ibid.

하는 실업자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아직까지도 계속 높은 상태이며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직업에 고용된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된 인원은 작년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sup>8)</sup>.

## ■ 이주 노동자 정책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스웨덴의 인구도 다른 유럽 국가의 인구들처럼 고령화가 심한 상태인데 사실상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인인구 부양 비율이<sup>9)</sup> 평균 0.71명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수치는 2060년에 이르면 평균 0.88명으로 올라가리라고 예측된다.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긴급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노동력 부족을 예상해 그에 필요한 법률안 준비 작업을 미리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1994년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유럽연합 소속 27개 회원국 출신 노동력의 자유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대신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이주 노동자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던 2004년에 시작되었다. 2004년 2월 19일자로 사회민주당은 연정파트너인 좌익당과 환경당과 합의하여 국회에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협력국가 외부로부터 미래에 노동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주 노동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Kommittén för arbetskraftsinvandring: KAKI)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이주 노동자에 관련한 법률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의 필요성, 이주 노동자 유입 후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조처, 그리고 스웨덴이 어떻게 하면 기후도 나쁘고 언어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과 경쟁해 이주 노동자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가에 대한 문제도 다룰 예정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특별위원회의 의장으로는 사회민주당 출신 전 부수상 레나 엘름 발렌(Lena Hjelm-Wallen)이 담당하였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2005년 3월 1일에 중간보고서 발표, 2006년 3월 1일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사

8) Ibid.

9) 노인인구 부양 비율은 생산활동 인구 1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를 지칭한다.

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특별위원회 측으로부터 2회에 걸친 활동 기간 연장 요청 및 국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보고서는 2006년 10월 18일에 중도우파 정권의 노동시장 장관 스벤 오토 릿토린(Sven Otto Littorin)에게 제출되었다<sup>10)</sup>.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1)</sup>.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스웨덴 내의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의 일정 부문에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우선 일차적으로 스웨덴 내의 노동력을 충당하도록 하며 이차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협력국 이외의 노동력을 충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합당한 노동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도 찾지 못했을 경우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협력국 이외의 국가에서 노동력을 충당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채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우선 24개월에 유효한 거주 및 노동허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재 보통 거주 및 노동허가가 최고 18개월의 유효기간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스웨덴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유인도가 다른 유럽국가보다 더 높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주가 만일 노동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24개월간 연장할 가능성을 부여하며 그 노동자는 그 이후에 스웨덴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고용되었을 경우 그의 가족들도 동시에 거주 및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조건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률을 가진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해 스웨덴에서 이주 노동자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구직을 위해 3개월간 임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웨덴 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학기간이 끝난 이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도록 하였다<sup>12)</sup>. 위에서 드러났듯이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사회민주당과 서비스 및 생산직노조 중앙조직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스웨덴 내의 비슷한 직업에

10) Riksdagen, Direktiv, 2006:13, Tilläggsdirektiv till Kommitten för arbetskraftinvandring(N2004:09), SOU 2006:87, Arbetskraftsinvandring till Sverige – förslag och konsekvenser

11) SOU 2005:50, Arbetskraftsinvandring till Sverige – befolkningsutveckling, arbetsmarknad i förändring, internationell utblick

12) 사실상 2002년 이후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 유학생들이 노동을 원할 경우 거주허가 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로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Migrationsverket, 스웨덴이민국, 2010, Rapport 2010:2, Migration 2000-2010).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중도우파 정부의 스벤 오토 린트린 노동시장 장관은 이주 노동자 정책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훌륭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법률안 작성에 있어서는 좀 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노동시장 장관은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스웨덴의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공급 부문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장관은 기업체의 노동력 부족을 진단,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의 파트너와 국영직업알선소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sup>13)</sup>.

## ■ 이주 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 변경 제안은 사회민주당이 주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지만 2006년 9월 중도우파로 정권이 넘어감으로써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률안은 사회민주당 및 연정파트너의 입장보다는 중도우파의 입장이 더욱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뚜렷하다. 이주 노동자 정책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스웨덴의 정책 결정 전통에 따라 주요 기관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도록 송부되었다. 여러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7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이후 국회의 토론을 거쳐 2008년 12월 15일에 새로운 법안이 채택되었다.

이 법안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부기관의 노동력 필요성 결정권한 정지

개별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 필요성을 결정한 이후 이민국을 통해 그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및 노동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 법률안은 개별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의

13) 스웨덴 산업부 (2006-10-18) Pressmeddelande

능력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이유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 외국인이 스웨덴으로 노동이주를 할 때 충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

외국인이 스웨덴으로 노동이주를 할 때 충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은 그 외국인이 스웨덴의 사업주로부터 고용의 건의를 받고 그 직업을 통해 본인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경우 노동조건은 그 직업에 적용되는 스웨덴의 단체협약에 명기된 노동조건보다 열악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직업이나 해당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보다 열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유럽연합이나 유럽연합 협력국 출신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 고용을 기본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 확대

노동허가는 최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또는 고용의 성질에 따라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노동허가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노동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스웨덴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총 고용허가 기간은 4년보다 짧아야 한다. 4년이 지나면 한시적인 거주 및 노동허가는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는 약 3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고용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sup>14)</sup>.

## 노동허가는 일정한 고용주와 일정한 직업과 연계성 유지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노동허가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고용주와 일정한 직업과 연계성을 유지한다. 2년이 지난 이후에는 한시적인 노동허가는 일정한 직업과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노동허가에 대한 서류 처리

거주 및 노동허가에 대한 서류 처리는 한 정부기관이 다루도록 한다. 이민국은 국영직업알선소

14) 고용을 근거로 거주허가를 받은 300명이라는 수치는 2009년에 망명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거주허가를 받은 10만 2,280명의 수치와 비교될 수 있다(스웨덴 통계청, SCB, 2010).

로부터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협력국 출신 노동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이양받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이미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보다 열악하지 않을 것도 검토해야 한다.

### 3개월간 외국인 노동허가 취소 유예

이민국은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만일 고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노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3개월 동안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학생들에게 스웨덴 국내에서 노동허가 신청 가능성 부여

한 유학생이 대학에서 30학점을 수료했을 경우 또는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1학기 수업을 완료했을 경우 스웨덴 국내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유학을 근거로 받은 거주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망명 요청이 거절된 자들에게 스웨덴 국내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기회 부여

한 망명 요청자가 망명 요청을 거절당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스웨덴 국내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망명 신청자는 적어도 스웨덴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였거나 한 사업주로부터 정규적 고용의 제의를 받았거나 최소 고용 지속 기간이 1년일 경우 그리고 덧붙여 외국인이 스웨덴으로 노동이주를 할 경우 기본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망명 요청이 거절된 자는 망명 요청의 거부를 당한 후 2주 이내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스웨덴 각 정당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견해

금년 9월 19일에 열린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 : SD)이 스웨덴 국회 진입에 걸림돌인 전국적 4% 이상의 지지율을 넘어 앞으로 기존 7개 정당 이외에 1개의 정당이 추가 되어



8개 정당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sup>15)</sup>. 스웨덴 민주당과 기존 8개 정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민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며 앞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금 및 전쟁 난민 이주 허가 숫자 감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물론 스웨덴 민주당의 의석 수가 전체 349석 중 20석에 불과해 이주 노동자 및 망명자에 대한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주 노동자 정책에 부정적으로 미칠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다.

## ■ 스웨덴 기업자총연맹과 각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견해

스웨덴의 기업자총연맹은 오랜 동안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물론 기업이 항상 고용비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기업자총연맹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스웨덴 노동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데는 주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잘 통제된 상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추진하려는 입장이다<sup>16)</sup>.

스웨덴의 경우, 3개의 노동조합 중앙조직이 존재하는데 그 중 전문직노동자 중앙조직인 SACO

15) 실제로 금년 9월 19일에 열린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84.64%이며, 중도보수당이 30.06%, 기독교민주당이 5.6%, 자유국민당이 7.06%, 중앙당이 6.56%, 사회민주당이 30.66%, 환경녹색당이 7.34%, 좌익당이 5.60%, 마지막으로 스웨덴민주당이 5.70%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http://www.val.se/val/val2010/slutresultat/R/riks/index.html>). 국회 의석 수를 보면 중도보수당이 107석, 기독교민주당이 19석, 자유국민당이 24석, 중앙당이 23석, 사회민주당이 112석, 환경녹색당이 25석, 좌익당이 19석, 마지막으로 스웨덴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보수연합은 총 173석, 적녹연합은 156석을 차지하여 보수연합은 소수정권으로 출발하였고, 앞으로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정책결정 시 스웨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16) 스웨덴 기업자총연맹(Svenskt Näringsliv, 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2007-11-15, Remissyttrande, Angående betänkandet "Arbetskraftsinvandring till Sverige -förslag och konsekvenser (SOU 2006:87)" samt över departementskrivelsen. "Ett effektivt och flexibelt system för arbetskraftsinvandring (Ds 2007:27)".

는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의 유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해왔다. 이주 노동자의 유입은 스웨덴 내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스웨덴을 포함한 전체 유럽 내에 실업률을 낮출 가능성도 높인다는 의견이다<sup>17)</sup>. 사무직 노동자 중앙조직인 TCO도 이민자들의 유입이 스웨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sup>18)</sup>. 이와 달리 서비스 및 제조업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LO는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 유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기존의 스웨덴 노동자와 동등하게 유지한다면 사업주의 이주 노동자 채용에 반대하지 않을 입장이다<sup>19)</sup>.

## ■ 맺음말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구이동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으로 노동을 근거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로서도 상당한 도전이 된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평가연구소(IFAU)가 지적한 바대로 스웨덴 정부가 노동시장을 합법적으로 유럽연합 외부 국가들에게 개방한다면 이미 스웨덴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지도 모르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서비스업계의 노동임금을 더욱 하락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sup>20)</sup>.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950년 및 1960년에 이주한 노동자들의 2,3세대와 1980년 이후 스웨덴으로 이주한 전쟁 난민들의 취업률은 계속적으로 스웨덴 자국 노동자들보다 낮은 상태이다. 스웨덴 국가로부터 사회부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이민자들의 수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은 간혹 이민자들이 국가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며 또한 일부 스웨덴들에게 외국인 혐오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어쨌든 스웨덴의 경우 여러 번에 걸친 의견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를 채용하는 데 긍정

17) SACO, 2005-05-18, Pressmeddelande.

18) TCO, 2010-06-22, Debattartiklar "Invandring gynnar tillväxt".

19) LO, 2000-06-05, Los yttrande över Långtidsutredningen 1999/2000 (SOU 2000:7).

20) Svenska Dagbladet, 2007-11-14, "Oro kring ökad arbetskraftinvandring".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입안한 새로운 이주 노동자 정책은 노동시장의 세계화 추세와 스웨덴의 인구 변화 추세와 잘 조화되는 정책이며, 노동이주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그 동안 실제적으로 닫혀 있었던 스웨덴의 노동시장의 문을 개방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협력국 외부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스웨덴에 이주해 와서 정착하는 데는 기후 문제도 있고 언어 문제도 상당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스웨덴의 최근 총선 결과 추가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스웨덴민주당의 국회 진입으로 실제로 새로운 이민법을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스웨덴으로 진입하는 수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자격만 갖추고 관심이 있다면 스웨덴으로 노동을 근거로 이주할 기회는 예전에 비해 비교적 많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KLI**